

2026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(안)

2026년 편사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026. 7. 8.

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(응시번호순)

채용분야	합격자 (응시번호/성명)	
조선시대사	101 강○○	102 김○○
	103 유○○	104 김○○
	105 김○○	106 권○○
	107 허○○	108 이○○
	109 조○○	110 구○○
	111 이○○	112 정○○
	113 정○○	114 류○○
	115 이○○	116 윤○○
	117 최○○	
한국현대사	201 김○○	203 이○○
	204 황○○	205 김○○
	206 조○○	207 최○○
	208 서○○	209 김○○
	210 박○○	211 전○○
	212 양○○	213 봉○○
	214 오○○	215 곽○○
역사정보화	302 박○○	305 김○○
	307 박○○	

2. 필기시험 안내

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.

○ 일시: 2026. 7. 14.(화) 9:10~14:20

※ 별도의 중식시간 없이 1~4교시 시험이 진행됩니다.

○ 장소: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3층 국제회의실(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)

○ 시험과목: 총 4과목(사학개론, 한국사, 영어, 한문 / 전과목 주관식)

< 시험과목 · 문항수 · 배점 · 시간 등 >

구 분	시험과목	문항수	배점	시험내용	시험시간
1교시	사학개론	3	100	한국사학사, 역사학개론	9:10~10:10(60분)
2교시	한국사	4(3)*	150	조선시대사, 한국근대사, 한국현대사	10:20~11:50(90분)
3교시	영어	4	100	-	12:10~13:10(60분)
4교시	한문	5	100	-	13:20~14:20(60분)

* 한국사 과목의 경우, 조선시대사 및 한국현대사 분야는 4문항, 역사정보화 분야는 3문항 실시

※ 조선시대사 한문 과목의 경우, 초서 원문 사료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

3. 응시자 준수사항

○ 시험당일 8:45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당일 8:00 시험실 개방)

※ 시험실 입실 마감시간(8:45) 이후에는 입실 불가

○ 1차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~4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2차시 시험 미응시자는 3~4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, 3차시 시험 미응시자는 4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시험 전일에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○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 차량의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-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을 반드시 소지**해야 합니다.
 - **신분증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가능)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1개**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(증)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제운전면허증,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**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**
 - ※ 또한,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**모바일 신분증**은 본인 확인을 위한 **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**
- **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 등이 있는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** (휴대전화, 노트북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 - ※ 응시자가 소지한 전자통신기기는 1교시 시험 시작 전 수거하여 4교시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.
- **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이 가능**합니다. 다만,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**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**합니다.
 - 화장실 사용은 **교시별 1회**에 한해 가능하며,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5분 전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가능 시간은 응시자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소지품 검사,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화장실 사용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, 교시별 1회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 (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)
 -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 - ※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꺼내 복도에 둔 다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2명 이상 동시에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며, 먼저 사용한 응시자가 시험실에 돌아온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푹푹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, 과도한 향수 사용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시험지 및 답안지는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[답안지 작성]

-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※ 연필 사용 금지
- 연습용 답안지는 제공하지 않으며, 답안지를 수정할 때에는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※ 수정테이프, 수정액, 볼펜지우개 등 사용 금지
- 모든 기재사항은 지정된 곳에만 정자로 기재하고, 기재상의 오류나 불명확한 내용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○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금속탐지기 검색, 소지품 검사, 지정 화장실 사용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
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허용시간·횟수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하는 경우

-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답안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특히,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응시표는 시험실 입실 후 배부 예정

▶ 시험 관련 문의 : ☎ 02-500-8224